#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0 발의연월일: 2024. 5. 31.

발 의 자: 김주영 · 윤준병 · 문정복

박해철 • 이용우 • 윤후덕

서영교 • 박홍배 • 김영호

박정현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,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 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.

그러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편의점,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 등은 업무숙련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주일 이내로 짧아 '수습사용'을 적용하기에 무리한 점이 있고, 단순·반복적인 업무의 특 성상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.

이에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임금·불안정 •단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(제5조제2항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최저임금액) ① (생 략)	제5조(최저임금액) ① (현행과 같
	<u></u>
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	<u>&lt;삭 제&gt;</u>
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	
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	
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	
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	
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	
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	
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	
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	
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	
<u>다.</u>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